


기안용지

분류기호	문서번호	전화번호	전결규정	조항
	가량아470- 2	72-7630)		전설사항
처리기간	주택국장			홍정용
시행일자	74. 12. 12	홍정용		
보존년한				
보조기관	가량2과장	가량1과장	주택행정과장	
	가량2과장	가량1과장	법무담당관(고시안심사)	
	관리계장	관리계장	시민과장	
기안책임자	최중근	74. 9. 3. 참	조 문서관리계장	
경유	가안 참조	반	통	
수신		신	제	
참조				
제 목	주택 가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실시 계획및 변경추고시			
" 제 1 안 " (나부결재)				
<p>1. 서울특별시 공고제115호 (74. 6. 17) 및 제126호 (74. 6. 29) 로 종로구 명륜외3구역 (신규) 및 고척구역 (사업변경) 에 대한 주택가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계획 (변경) 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이기 도시 계획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14일간종람에 공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실시 계획및 변경추인가를 신청하였던바 건설부 고시제294호 (74. 8. 30) 및 건설부고시제294호 (74. 8. 30) 및 건설부 고시 제280 (74. 8. 27) 로 사업실시 계획및 변경추인가 되었기 계획 내용을 도시 계획법 제 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수 고시하고저 품신합니다.</p>				
2. 고시 내역				
<p>가. 사업의 종류및 명칭 : 명륜외3구역 주택가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</p>				
<p>나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</p>				

구역명	위치	면적	고시종별
명륜구역	종로구 명륜동, 와룡동 각1부	98,010 m ²	사업실시계획인가
한남1구역	용산구 한남동 일부	38,258 '	"
고척구역	영등포구 고척동 일부	28,810 '	(항상 변경) 208.753개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

74. 9. 1 123 호

" 제 2 안 "

서울특별시 고시

주택가량을 위한 사업실시 계획 및 변경 승인 가 고시

1. 건설부 고시 제470호 (73. 12. 1) 로 주택가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외1구역 (신규) 및 고척구역 (사업 계획변경) 에 대하여 ~~건설부 장관으로부터~~ 도시 계획법 제25조 ^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294호 (74. 8. 30) 및 ~~건설부 고시~~ 제280호 (74. 8. 21) 로 사업실시 계획 및 변경 승인이 되었으므로 동법 제26조 ^의 규정에 ^{의거} 이를 ~~완전~~ 고시 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량2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하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3. 사업고시 내역

제1안 2항 고시 내역 이기시행

1974. 9. .

서울특별시 장

" 제 3 안 "

수신 수신지참조

발신 시장

제목 동건

1. 건설부 고시 제470호 (73. 12. 1) 로 주택가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외1구역 (신규) 및 고척구역 (사업 계획변경) 에 대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실시 계획 및 변경 승인 가 되어 인가 고시하니 토지

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.

첨부 고시문 사본1부.

도면 1부.

수신처 : 종로, 용산, 영등포

" 제 4 안 "

수신 총무처 장관 (서울특별시 공보실장) 발신 시장 (과장)

제목 관보 (시보) 게재 의뢰서

도시 계획법제12조, 13조, 및 건설부 고시제123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실시 계획및 변경추인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관(시)보에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 (시) 보 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관 (시) 보 게재 면명 :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실시 계획 (변경) 고시

첨부 고시문 사본1부. 끝.